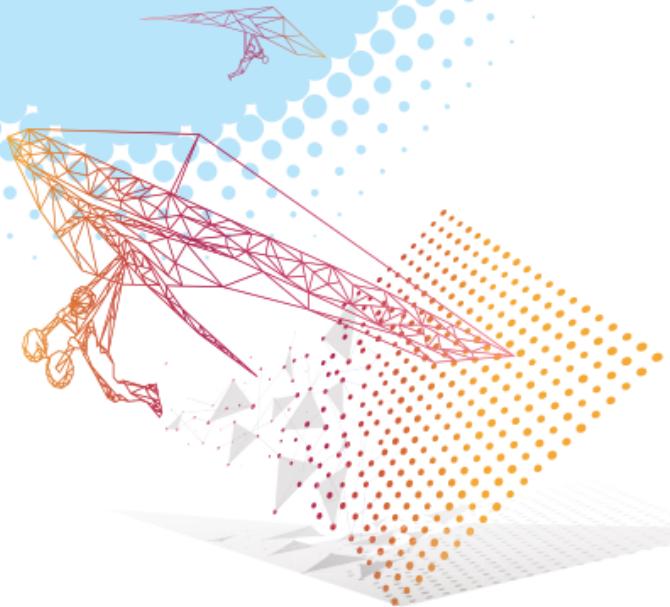


초보자도
알기쉬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와 안전성인증 가이드북



국토교통부



•



초보자도
알기쉬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와 안전성인증 가이드북

CONTENTS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04

- 1)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04
-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비대상 05
- 3) 신고서 및 제출서류 06
- 4) 비행장치 신고절차 06
- 5) 제출처 및 신고자 유의사항 07
- 6) 처벌 07

2. 경량항공기 등록 08

- 1) 경량항공기 종류 08
- 2) 신고서 및 제출서류 09
- 3) 경량항공기 등록 절차 09
- 4) 제출처 및 연락처 09

3. 안전성 인증 검사 10

- 1) 초경량비행장치 인증 검사 10
- 2) 경량항공기 인증 검사 13
- 3) 인증현황 확인 15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1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또는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는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제형	세종
	화물 5kg, 적재용량 113kg 미만
	마개중량 2kg 미만인 행동이미타한 폴리글라파
	증명서류첨부가능, 세종 미기준
	화물 1kg, 적재용량 115kg 미만의 초경량비행장치인 초경량헬리콥터
	증명서류가 없는 비행장치인 드론은 행동상성이 있는 것으로서 경체이 1kg, 최대용량 11kg 미만
	증명서류첨부 가능(기체중량 15kg 미만 및 1kg 미만인 적재용량 180kg 미만, 길이 20m 미만)
	정력을 놀랄시킬 때 그을 뇌피로는 사람 또는 물체에 속도를 느끼게 하는 비행장치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비대상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 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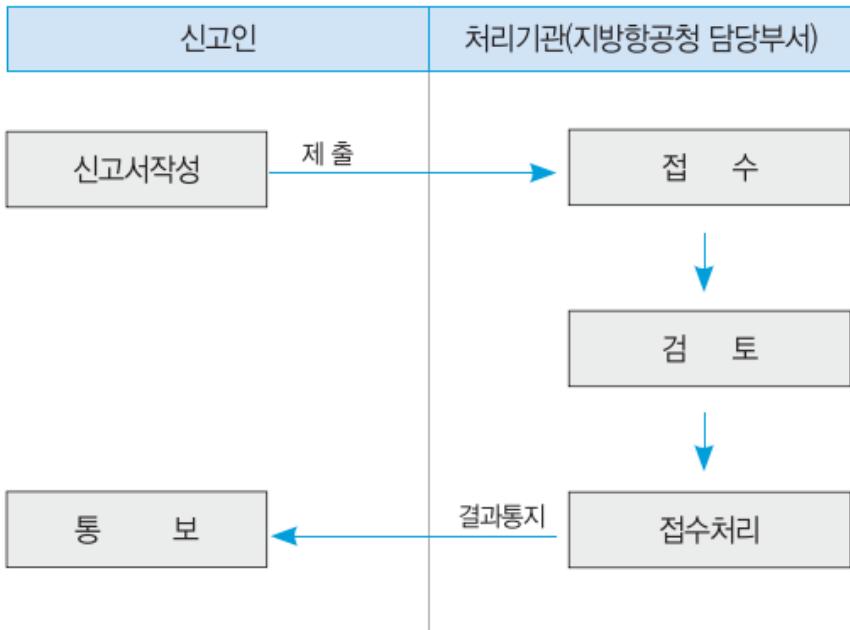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 · 조사 ·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3) 신고서 및 제출서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

4) 비행장치 신고절차





5) 제출처 및 신고자 유의사항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증명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사람은 신고사항 중 용도, 보관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의 멸실 등의 사유로 신고를 말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말소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행장치 신고 관할 지방항공청 연락처 〉

구 분	관할 구역	연락처
서울지방항공청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전라북도	항공안전과 032-740-2169
부산지방항공청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항공안전과 051-974-2147
제주지방항공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운항과 064-797-1741~3

6) 처벌(항공안전법 제16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경량항공기 등록

항공안전법 제7조(제121조 준용)에 따라 경량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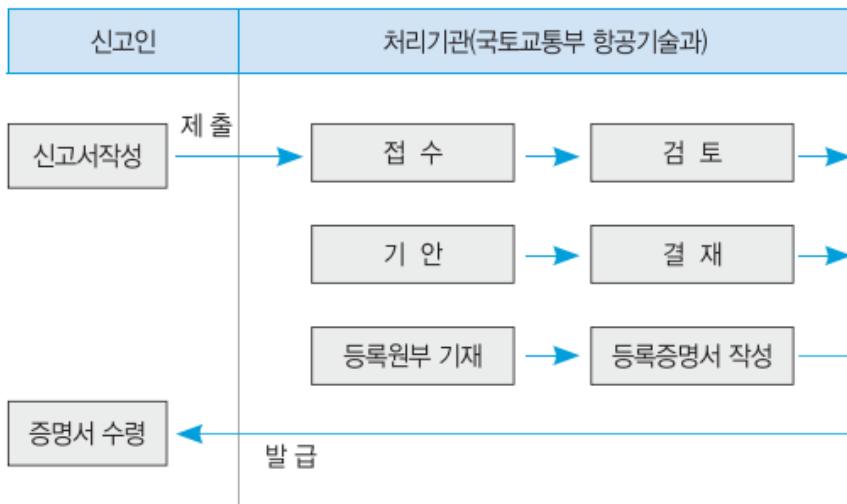
1) 경량항공기 종류

경량항공기 종류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경량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파러슈트

2) 신고서 및 제출서류(항공기 등록규칙 제20조)

- 등록원인(항공기의 소유 또는 임차)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나 그 밖에 상속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 항공기 좌·우 측면 사진

3) 경량항공기 등록 절차



4) 제출처 및 연락처

〈 경량항공기 등록 접수처 〉

구 분	연락처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7

3. 안전성 인증 검사

1) 초경량비행장치 인증 검사(항공안전법 제124조, 시행규칙 제305조)

초경량비행장치는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초경량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가) 검사종류

〈 안전성 인증 검사 종류 〉

구 분	내 용
초도검사	국내에서 설계 ·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위하여 최초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재 검 사	초도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발견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검사(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 안전성 인증 검사 대상

안전성 인증 검사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행장치에 적용한다.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에 한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
-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

다) 제출서류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검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초도	정기	수시	재인증
1.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	○		○	
2. 부품표	○		○	
3. 비행 및 주요정비 현황	○ (해당시)	○		
4. 성능검사표	○	○	○	○
5.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인증하는 서류	○		○ (해당시)	
6. 작업 지시서*	○ (해당시)		○ (해당시)	○



구비서류	초도	정기	수시	재인증
7. 운용지침	0			
8. 정비교범	0			
9. 수입신고필증	0 (필요시)			
10. 정비서류	0	0		
11. 비상낙하산 재포장카드	0	0	0	
12. 송수신기 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13. 성능개량을 위한 변경 항목 목록표 및 확인서	0	0	0	
14. 국토부 시험비행허가 서류	0			

* 초도검사시 외국에서 제작되어 시험비행 후 이동을 위해 분해하여 국내에서 재조립한 비행장치는 6호 서류 제외

라) 처벌(항공안전법 제166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 연락처

구 분	연락처
항공안전기술원	032-727-5891



2) 경량항공기 인증 검사(항공안전법 제108조, 시행규칙 제284조)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정비 관련 기록, 경량항공기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 종류는 초경량비행장치와 동일합니다.

가) 안전성 인증 검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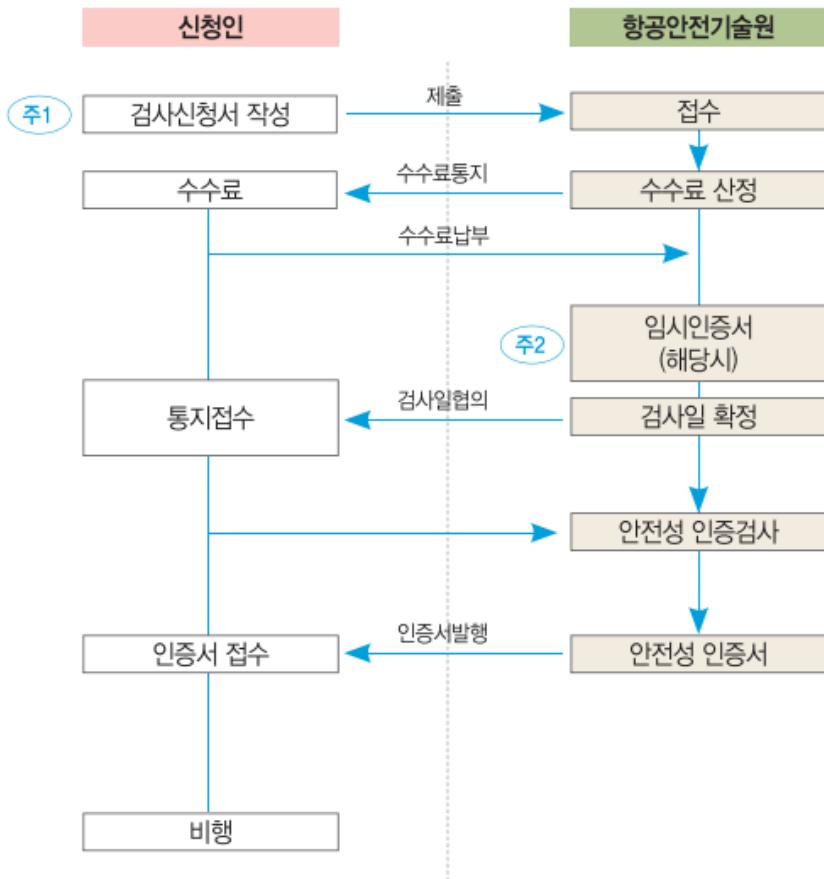
안전성 인증 검사 대상은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량항공기에 적용합니다.

- 타면조종형비행기
- 경량헬리콥터
- 동력파러슈트
- 체중이동형비행기
- 자이로플레인

[〈 안전성 인증검사 관련 홈페이지 〉](#)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Safe Flying Korea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banner with the text "경량항공기 및 소형항공기 안전성인증" (Safe Flying License for Small Aircraft and Light Aircraft).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veral sections: "검사서류" (Inspection Documents), "면허증" (License), "면허증 제작" (License Production), "면허증 확장" (License Extension), and "면허증 재발급" (License Renewal). A large central image shows a white, single-seat aircraft flying over a green landscape.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footer with the website address www.safeflying.kr.

나) 검사신청 순서(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 동일)



- 주1) 초도검사일 경우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에 경량항공기를 등록하고 안전성인증을 신청합니다
- 주2) 초도검사 또는 안전성 인증서 유효기간 경과시 임시 안전성인증서 발행 후 시험 비행합니다

다) 처벌(과태료, 항공안전법 제166조)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인증현황 확인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정보제공 홈페이지(<http://luass.airsafety.or.k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체의 안전성인증 유효여부, 신고/등록 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도 알기쉬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와
안전성인증 가이드북**



국토교통부